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반 지주회사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으로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개정 법률 인용 조문 정비(시행령 제21조의2, 제21조의4, 제21조의5, 제82조의제2항 16호 및 17호, 제82조의2의 13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중 “법 제22조제3항”을 “법 제2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4 중 “법 제22조의2”를 “법 제22조의3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5제1항 중 “법 제22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의4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2조의3제6항”을 “법 제22조의4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제16호 중 “법 제22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의4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“법 제22조의4”를 “법 제22조의5”로 한다.

제82조의2제13호 중 “법 제22조의4”를 “법 제22조의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1조의2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) <u>법 제22조제3항</u> 본문에서 “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”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21조의2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) <u>법 제22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제21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) <u>법 제22조의2</u> 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·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·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21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) <u>법 제22조의3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제21조의5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) ① <u>법 제22조의3제2항</u> 에 따라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	제21조의5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) ① <u>법 제22조의4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			

다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제82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 1. ~ 15. (생략) 16.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.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② ----- 법 제22조의4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82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16. 법 제22조의4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 17. 법 제22조의5-----
--	---

인 표준사업장의 인증·인증 취소 및 공고 18. ~ 40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 제8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 (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 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하 다),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 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 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12. (생 략) 13. <u>법 제22조의4</u>에 따른 장애 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 증취소에 관한 사무 14. ~ 25. (생 략)	----- ----- 18. ~ 40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8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법 제22조의5</u>----- ----- ----- 14. ~ 25.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85